

2013년 1자 일반

2013. 3. 15 (금)

기출 문제 풀이

경찰학

조용석 교수

2013년 순경공채시험 경찰학 기출

총평	<p>전반적으로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를 위주로 출제되어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러한 것은 수사관련문제가 약 2문제정도가 출제되었지만 가정폭력부분을 제외하면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출제하여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다고 보여진다. 외국 경찰제도는 최근 몇 년간은 한문제도 출제되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과 정확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고, 한번 정도는 보았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었다.</p>			
출제비율	총론	1 경찰과 경찰학	2문제	총 10 문제 (50%)
		2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1문제	
		3 외국경찰제도	-	
		4 경찰법학	5문제	
		5 경찰행정학	-	
		6 경찰통제와 향후과제	2문제	
각론	각론	1 생활안전경찰	1문제	총 10 문제 (50%)
		2 수사경찰	2문제	
		3 교통경찰	2문제	
		4 경비경찰	1문제	
		5 정보경찰	1문제	
		6 보안경찰	1문제	
		7 외사경찰	2문제	
		8 기타	-	
대책	<p>1. 총론과 각론에 출제비율에 맞춰 준비하되 총론은 이해를 위주로, 각론은 암기를 중점을 두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2. 개념정의와 법조문과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대비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p>			

1. 경찰부파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체사회가설은 월슨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에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 썩은사과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니더호퍼, 로버, 바커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정답) ④

해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서면이 주장한 이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이론이다.

2.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에 관한 조직법적·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외형상 근대국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내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법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했다.
-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증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법인 행정경찰장을 제정하였다.

정답) ①

해설) ② (X).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법무아문에 창설하였으나, 곧 내무아문으로 소속을 변경시켰다.

- (X).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했다.

- (X). 일본의 행정경찰규칙과 위경죄증결례를 혼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작용법인 행정경찰장을 제정하였다.

3.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7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4.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권한의 위임은 경찰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경찰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그 수임기관이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없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 대리기관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대리기관)의 명의로 대리한다.

정답) ②

해설) 권한의 위임은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 ⑦ 계급장년은 치안감 4년, 총경 ()년이다.
 ⑧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장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11 ② 15 ③ 16 ④ 17

정답) ③

해설) ① 계급별 정년 : 치안감 - 4년, 총경 - 11년, 경무관 - 6년, 경정 - 14년

② 수사·정보·외사·보안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는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 ①번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외부강의 등 신고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④

해설)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경찰봉·최루탄 등을 말한다.

정답) ④

해설)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② 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경찰봉은 경찰장구에 해당하고, 최루탄은 분사기 등에 해당한다.

9. 다음은 인터넷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① 상습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발행
② 시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① ㉠ - Green Notice (녹색수배서)
㉡ - Yellow Notice (황색수배서)

②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Yellow Notice (황색수배서)

③ ㉠ - Blue Notice (청색수배서)
㉡ - Black Notice (흑색수배서)

④ ㉠ - Green Notice (녹색수배서)
㉡ - Black Notice (흑색수배서)

정답) ④

해설) 인터폴 국제수배

국 제 수 배 서 의 종류	적색수 배서 (Red Notice: Form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발행된다. <p>[인터폴 적색수배의 요청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살인,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②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사범 ③ 다액(50억원 이상) 경제사범 ④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청색수 배서 (Blue Notice: Form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색 수배서는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수배자의 도피처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 특정 회원국에 통보된다.
	녹색수 배서 (Green Notice: Form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또는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전파의 정도·범죄의 종류·국제범죄조직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상습 국제범죄자 발견시 계속 동향을 감시하여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어떤 범행위가 있으면 사무총국 및 수배요청국에 통보하여 외교절차를 밟아 해결).
	황색수 배서 (Yellow Notice: Form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색수배서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
	흑색수 배서 (Black Notice : Form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장물수 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난당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 문화재(미술품, 고대유물 등)에 대해 수배를 하는 것으로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행
	Orange Notice (보안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 하기위해 발행
국 제 수 배 서 의 발 행 및 취 소 절 차	범죄수 법수 배서 (Modus Operandi She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 관리하고 각 회원국에 배포하여 수사기관이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케하고 또한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발행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①

해설) ⑦(0). 동법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동법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X). 동법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X). 동법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동법 제23조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주로 경찰력에 의존해 왔던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 한계에 이르고 범죄는 더욱 다양화, 지능화, 흉폭화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의 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이다. 다음 중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11. 기본원리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역성의 약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약화
- ②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감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 ③ 자연적 접근 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 ④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와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정답) ①

해설) ① 영역성의 강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

[CPTED(CCTV)의 기본원리]

자연적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이나 시설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위험을 증가시키고,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원리 예)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및 조명·조경 설치 등
자연적 접근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예)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잠금장치·방범창 등의 설치
영역성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하여 사적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예) 울티라표지판의 설치·사작반(半)사작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성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예)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자·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예)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상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취해야 하는 응급조치로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접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⑤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⑥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① ⑦⑧⑨ ② ⑩⑪⑫ ③ ⑮⑯⑰ ④ ⑪⑫⑬

정답) ①

해설) ⑦⑧⑨은 임시조치에 해당하고, ⑩⑪⑫은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접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3.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④

해설) 모두 옳은 지문이다.

- ①(0).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⑤(0).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⑥(0).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⑦(0).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4. 「형사소송법」 상 경찰수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②

- 해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15. 다음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상 경찰장구는 모두 몇 개인가?

- | | | | |
|---------|---------|-------|----------|
| ① 수갑 | ② 가스분사기 | ③ 기관총 | ④ 경찰봉 |
| ② 유탄발사기 | ④ 전자충격기 | ⑤ 석궁 | ⑥ 다목적발사기 |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

정답) ②

해설) ①②⑥이 장구에 해당한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장구	수갑·포승(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무기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분사기·최루탄등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16. 「통합방위법」 상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과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②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 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① ①-갑종사태, ②-을종사태 ② ①-병종사태, ①-갑종사태
 ③ ①-을종사태, ②-갑종사태 ④ ①-갑종사태, ②-병종사태

정답) ②

해설) 통합방위사태

갑종사태	「갑종사태」라 함은 대규모의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시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을종사태	「을종사태」라 함은 일부 또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병종사태	「병종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태를 말한다.

17. 다음 중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행정처분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② 3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③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④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취소된 날부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④

해설) ①④년, ②③년, ④즉시, ④2년으로 발급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는 없다.

기간 제한	사유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 : 위반한 날 1년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 무면허위반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6개월 (공동위험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 2년 ~ 5년 외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기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 다른 범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2년 • 음주 3회 이상 위반 또는 공동위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 : 취소된 날부터 2년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아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3년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 음주약물, 과로 또는 공동위험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4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면허운전을 한 자가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위반한 날부터 5년 • 음주약물복용, 과로 또는 공동위험행위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옥외집회」란 천장이 있고, 사방이 폐쇄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②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 ③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①(X).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②③④은 옳은 지문이다.

19. 「보안관찰법」 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보안관찰처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자체 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④

해설) 모두 옳은 지문이다.

20. 다음의 설명은 범죄인인도원칙 중 어떤 원칙에 대한 내용인가?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법을 적용한다.

- ① 쌍방가별성의 원칙 ② 상호주의의 원칙
- ③ 특정성의 원칙 ④ 유용성의 원칙

정답) ②

해설) 인도의 제한

범죄인 인도 사건의 전속관할(제3조)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인도조약과의 관계(제3조의2)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에 대한 원칙(제5조)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쌍방가별성의 원칙 최소한 중요성원칙(제6조)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유용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이란 범인인도가 범죄사실을 처벌할 수 있다는데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기초하고 있으므로 인도가 실제로 유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시효에 걸렸다든지 사면을 내린 경우에는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정치범불인도(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도범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2. 다자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3.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를 대한 위협을 발생시키는 범죄 •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해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은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미법계 국가들은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들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관계로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범죄인인도법 제9조에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교상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인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국인의 인도를 절대적 거절사유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성의 원칙(제10조)	<p>인도된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도가 허용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죄 또는 인도된 후에 범한 범죄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경우 2. 범죄인이 인도된 후 청구국의 영역을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청구국에 재입국한 경우 3. 범죄인이 자유롭게 청구국을 떠날 수 있게 된 후 45일 이내에 청구국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이 동의하는 경우
군사범불인도의 원칙(법규정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범죄란 군사적 의무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 행위를 말하며 탈영, 학병 등이 대표적이다. • 그러나 군대 내에서의 범죄라 하더라도 일반범죄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절도와 같은 범죄는 인도대상이 된다. • 우리나라에는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